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8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
제 호

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

업 체 명:

주 소:

주생산품:

지정기간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의6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8제2항에 따라 귀사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

210㎜×297㎜[보존용지 120g/㎡]